

의안 번호	제2586호~2589호
----------	--------------

2025. 1. 24.(금) 10:00
제3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심 사 보 고 서

안 건
총 4건: : 붙임 참조 (개정조례안3, 폐지조례안1)



행정자치위원회

# 심사보고총괄

## I 심사대상 안건

- 의안번호 제2589호 :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제2586호 : 장애 차별적 용어 및 표현 정비를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제2587호 :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 의안번호 제2588호 : 장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II 심사경과

의안번호	제출일	제출자 (발의자)	회부일	상정일 (제1차행차위)
제2589호	2025. 1. 9.	장성군수	2025. 1. 9.	2025. 1. 15.
제2586호	2025. 1. 7.	장성군수	2025. 1. 7.	2025. 1. 15.
제2587호	2025. 1. 7.	장성군수	2025. 1. 7.	2025. 1. 15.
제2588호	2025. 1. 7.	장성군수	2025. 1. 7.	2025. 1. 15.

## III 심사결과

안건	심사결과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장애 차별적 용어 및 표현 정비를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1. 심사경위

- 제출일자 : 2025. 1. 9.
- 제출자 : 장성군수(총무과장)
- 회부일자 : 2025. 1. 9.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1. 15.(제366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부단체장 직급 상향 및 정원 조정 현황화 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안 제4조 및 별표3 관련)
  - 총 계 : 685명 ⇒ 685명 ( - )
  - 일반직 : 649명 ⇒ 649명 ( - )
    - 3급 : 0명 ⇒ 1명 (본청 +1)
    - 4급 : 4명 ⇒ 3명 (본청 △1)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부단체장 직급 상향 및 정원조정 현행화 하기 위한 것으로,
-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 5. 토론요지 : 없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1. 심사경위

- 제출일자 : 2025. 1. 7.
- 제출자 : 장성군수(주민복지과장)
- 회부일자 : 2025. 1. 7.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1. 15.(제366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이유  
장애 차별적 용어 및 표현 정비로 장애 인식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정비를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  
- 16개부서 소관 / 20개 자치법규
  - 자치법규의 장애 차별적 표현 및 용어 정비(위원 해촉사유 등)  
- (현행) 심신장애 등 → (개정)부득이한 사유 등
  - 직무수행에 대해 제3자가 판단해 위원 해임 등 사유로 삼는 것은 부적절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 차별적 용어 및 표현 정비로 장애 인식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 5. 토론요지 : 없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1. 심사경위

- 제출일자 : 2025. 1. 7.
- 제출자 : 장성군수(체육사업소장)
- 회부일자 : 2025. 1. 7.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1. 15.(제366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이유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사업을 일반회계에 통합 운영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
- 주요내용
  -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폐지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폐지조례안은 체육진흥기금 사업을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 5. 토론요지 : 없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1. 심사경위

- 제출일자 : 2025. 1. 7.
- 제출자 : 장성군수(체육사업소장)
- 회부일자 : 2025. 1. 7.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1. 15.(제366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 ○ 제안이유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 보호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선수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 보장하고, 지도자 및 선수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직장 내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 신설하기 위함.

### ○ 주요내용

-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선수의 인권 보호 조치 조문 신설(안제24조의2)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개정조례안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보호 조치 강화와 지도자 및 선수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직장 내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 5. 토론요지 : 없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